

제주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가단42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중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원

피 고 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진 담당변호사 김형근

변 론 종 결 2023. 8. 31.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제주시 F 임야 896㎡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22. 5.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주시 F 임야 8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25. 4. 21.경 이래 제주시 G에 주소지를 둔 H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한편 I는 제주시 G을 본적지로 하는 사람으로서 1950. 12. 23.에 사망하고 그의 재산은 호주상속인인 장남 J이 I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 J은 1994. 2. 22.에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은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1/4 지분씩 공동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주장 요지

제주시 G에 주소지로 둔 H와 그곳을 본적지로 둔 I는 동일인이다. 그런데 I는 1945. 10. 20.경 K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K가 1956. 7. 17.경 사망하자, 그 아들인 L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그런데 L는 2002. 5.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2022. 5. 10.경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I의 후손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각 상속 지분 비율대로 소유권이전등기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일응 제주시 G를 주소지로 둔 H와 그곳을 본적지로 둔 I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은 피고들이 다투지 않는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보건대, 원고 소속 종원인 증인 M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N와 O의 묘는 1971년경 설치된 것이고 N와 O는 원고의 종원이며 원고 소속 종원들이 그 묘의 벌초 등을 하면서 이를 관리하여 왔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증인 M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896㎡에 이르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여 왔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영상이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인적이 드문 산중에 위치한 외딴 토지이고 원고 소속 종원들이 벌초 등을 으로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묘소를 관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행위에 불과할 뿐으로 어느 정도의 계속성을 요하는 시효취득의 요건으로서 ‘점유’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를 20년간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울러 설령 I가 1945. 10. 20.경 K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더라도, K 또는 K의 재산을 상속한 L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던 이상, 그 물건변동의 효력은 잃고(민법 부칙 제471호, 1958. 2. 22. 제10조 제1항),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1966. 1. 1.경 원래의 소유자인 I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7930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P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이를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여전히 소유권이 L에게 있다고 오인한 나머지 자신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고 오인하였고 볼 여지가 크다. 그렇다면 원고는 법률의 부지에 따라 자신에게 점유권원이 있다고 믿었다는 것으로서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밝혀지지 않는 한, 설령 원고가 점유를 하여 왔더라도 자신의 점유가 무단점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욱